

[일련번호 : 11]

양 천 구

주 의 요 구

제 목 장기 미수령 주민등록증 관리 및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관리 소홀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내 용

1. 업무개요

♡♡동은 「주민등록법」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의 발급절차) 및 제40조(주민등록의 재발급) 제7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하여, 제8항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주민등록지 외 발급 신청기관에서 보관 중인 재발급된증을 6개월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거주지 읍·면·동으로 등기우송 및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에 수기로 정리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주민등록증을 등기배송 요청 시에는 주민등록증 발급 대장의 수령자란에 배송완료된 등기번호를 표시하여 서명을 대체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6개월 이상 미수령증 신청인의 주민등록지로 이송처리 소홀

♣♣동에서는 관외 주민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후 6개월 이상 미수령한 장기 미수령증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로 이송하고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에 수기정리 하여야 하나 2건의 장기 미수령증 대하여 이를 실시하지 않았고, 타 읍·면·동으로부터 우송받은 장기 미수령증을 발급대장에 수기정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미수령증 회수처리 부적정

♣♣동에서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주민등록증을 미수령 회수처리하여야 하나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1건)

다. 주민등록증 발급대상 작성 미흡

♣♣동에서는 주민등록증 등기배송 요청 건에 대하여 발급대장에 배송완료된 등기번호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기록하지 않거나 2022년 ~ 2023년 발급대상에 배송완료된 등기번호는 기재하였으나 교부일자를 다수 누락하는 등 미흡하게 처리하였다.

[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 작성 부적정 등 내역

연번	발급일	발급사유	성명	생년월일	교부일자	부적정내역
1	220415	분실			미교부	3년 경과 회수 미실시
2	230829	분실			등기우편수령신청자	등기우편수령 신청자 교부일자, 배송완료된 등기번호 표기 누락
3	240927	분실			미교부	6개월 미수령자, 거주지로 등기우송 및 수기정리 미실시
4	240516	분실			미교부	6개월 미수령자, 거주지로 등기우송 및 수기정리 미실시
5	230803	장기미수령증			이송공문일자 241113	우송받은 장기미수령증 발급대장에 수기정리 미비
6	211213	장기미수령증			이송공문일자 240327	우송받은 장기미수령증 발급대장에 수기정리 미비
7	220113	장기미수령증			이송공문일자 240111	우송받은 장기미수령증 발급대장에 수기정리 미비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동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5. 조치할 사항

☞☞동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 미수령 주민등록증 관리 및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작성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